

보도 일시	2023. 3. 17.(금) 07:00	배포 일시	2023. 3. 17.(금)
담당 부서 <총괄>	신통상전략지원관	책임자	과 장 윤선영 (044-203-4870)
	신통상전략과	담당자	사무관 박미령 (044-203-4871)
	신통상전략지원관	책임자	과 장 윤진영 (044-203-4890)
	기후에너지통상과	담당자	사무관 김혜림 (044-203-4891)

EU 집행위 「핵심원자재법」 및 「탄소중립산업법」 초안 발표

- EU 역내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생산능력 확대 목표 -

1. 주요 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3월 16일(목)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(Critical Raw Materials Act) 및 탄소중립산업법(Net-Zero Industry Act)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.

EU 핵심원자재법

-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
 - 금번 발표된 동법 초안은 ①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, ②원자재 확보 방안, ③공급망 리스크 관리, ④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 - ①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* 및 수입 다변화 목표** 설정
 - * '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% 추출, 40% 가공, 15% 재활용 역량 보유
 - ** '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%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
 - ② 동 법상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“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” 구성,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“원자재 전략 프로젝트”를 선정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지원
 - * (이사회) 전략 프로젝트 심사, 리스크 모니터링, 핵심전략 원자재 목록 업데이트 등 수행
 - ** (전략 프로젝트) 허가시한 부여(추출 포함시 최대 24개월),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, 민간 투자 촉진 등 효과적 이행 위해 지원

- ③ 공급망 리스크 관리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, 대기업* 공급망 자체 감사, EU 역내 수요-공급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

* EU 역내 전략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 중 전략원자재 사용 기업

- ④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①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·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*를 마련할 것을 규정, ②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예정 등

*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, 폐기물 재활용, 영구자석 재활용 등을 위한 방안 마련
환경발자국 선언(Environmental footprint declaration)을 위한 계산·확인 방법 도출

탄소중립산업법

-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(Green Deal Industrial Plan)*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*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 발표(23.2월)
 - 동 법안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*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,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, 규제 간소화, 인프라 구축 방안 등 포함
 - * △태양광, △풍력, △배터리, △히트펌프-지열에너지, △수전해장치(electrolysers), △바이오메탄, △탄소포집·저장(CCS), △그리드(Grid) 기술 등 총 8개 분야에 적용
 - ①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%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술혁신 지원*
 - *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지원, 연간 5천만톤의 이산화탄소 저장공간 확보 등
 - ②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‘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’ 지정,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, 윈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지원*
 - * 탄소중립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, 일자리 교육 및 역량 강화, 시장 모니터링 등
 - ③ 동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*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과
 - *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, 단일 국가로부터 65% 이상의 부품 조달 여부 등 고려

2. 그간의 대응

- 산업부는 동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**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** 민관합동 간담회('22.10, '22.11, '23.1), 전문가 간담회('23.3) 등을 통해 **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** 왔으며,
 - EU측에도 ①**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,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·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**되어야 하고, ②**기존에 추진중인 노동·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**가 있다는 **우리측 입장을 지속** 개선해 왔다.

* 한-EU 통상장관회담('22.11), EU 통상총국면담('23.2)

3. 평가 및 대응계획

- **핵심원자재법** 초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, **탄소중립산업법**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.
 - 다만,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**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** 하고 **대응 방안을 모색**하고자 **기업 간담회**(3.20일주 개최예정) 등을 통해 **논의할 예정**이다.
-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**입법과정에 약 1~2년이 소요될** 전망이다 바,
 - 업종별 영향,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**구체적인 대응계획**을 수립하여, **對 EU 아웃리치** 등을 통해 **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**하고 **기회요인은 극대화**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**지속적으로 협의**해나갈 계획이다.